

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1. 10.
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이천종합운동장 신설에 따른 시설운영 관리 전담기구 및 인력의 보강 승인과
-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,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한시기구(1과)가 승인되었고
- 지방자치단체 기구운용의 효율성과 자치단체간 통일성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·명칭운용 등에 관한 지침 시달로 우리 시 기구명칭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현실여건에 맞게 기구를 조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<기구신설>

-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과 (존치시한 : 2002. 12. 31까지) → 안 제7조
-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(사업소) → 안 제18조

<명칭변경>

- 기획감사실 → 기획감사담당관 (안 제5조)
- 문화공보실 → 문화공보담당관 (안 제6조)

<분장사무 조정>

- 문화공보실 : 체육관련 제반업무 → 자치행정국(주민지원과)
- 문화공보실 : 시민회관운영에 관한 사무 →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

<사업소 소재지 조정 >

- 산림공원사업소 : 이천시 중리동 187 → 이천시 관고동 356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중 “국장 및 실장·과장”을 “국장 및 실·과·소장·담당관”으로 하고, 제1항중 “실·과장”을 “실·과장 및 담당관”으로, “실·과·소”를 “실·과·소 및 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중 “실·국”을 “실·담당관·국”으로 하고, 본문중 “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, 문화공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중 제목의 “기획감사실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으로 하고, 본문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중 제목의 “문화공보실”을 “문화공보담당관”으로 하고, 본문중 “문화공보실장”을 “문화공보담당관”으로 하며, 제5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, 제6호를 제5호로, 제8호를 제6호로 한다

제7조제1항중 “회계과” 다음에 “주민지원과”를 삽입하고, 동조 제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체육진흥 및 체육회업무협조

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

- 가. 종합운동장 운영에 관한 사무
- 나. 시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
- 다.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
- 라. 기타,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
별표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산림공원사업소의 위치란 “중리동 187”을 “관고동 356”으로 하고, 산림공원사업소란 다음에 “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	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11-1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)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과는 2002년 12월 31까지 존속한다.

제3조 (다른조례의 개정) ①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중 “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, 문화공보담당관”으로 한다

②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주무실·과장”을 “주무 실·과장 및 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③이천시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으로 하고, “실·과·소장”을 “실·과·소장 및 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중 “실·과·소장”을 “실·과·소장 및 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④이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중 “실·과·소장”을 “실·과·소장 및 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⑤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중 “실·과·소장”을 “실·과·소장 및 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⑥이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⑦이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⑧이천시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중 “실·과장”을 “실·과장 및 담당관”으로 하고,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각각 “기획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⑨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⑩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⑪이천시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및 제14조중 “실·과·소장”을 각각 “실·과·소장 및 담당관”으로 하고, 제17조제3항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

⑫이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문화공보실장”을 “문화공보담당관”으로 하고, “문화공보실”을 “문화공보담당관 소속”으로 한다.

- ⑬이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제9조제2항중 “이천시문화공보실장”을 “이천시문화공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- ⑭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중 “문화공보실장”을 각각 “문화공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- ⑮이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2항중 “문화공보실장”을 “주민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- ⑯이천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중 “실·과·소장”을 “실·과·소장 및 담당관”으로 한다.
- ⑰이천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중 “실·과·소·읍·면·동장”을 “실·과·소장·담당관·읍·면·동장”으로 한다
- ⑱이천시사무의읍·면·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의 위임사무명란중 “문화공보실”을 “문화공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- ⑲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항제2호중 “문화공보실장”을 “문화공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- ⑳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3항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기획감사담당관“으로 한다.
- ㉑이천시노인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- ㉒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4항중 “실·과·소장”을 “실·과·소장 및 담당관”으로 한다.
- ㉓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4항중 “실·과·소장”을 “실·과·소장 및 담당관”으로 한다.
- ㉔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3항제1호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입 철 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인사담당 신 성 현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장 병 준 644-2113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
제2조(국장 및 실장·과장의 직급등) ①시 본청 국장의 직급, 본청·직속기관의 실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과 실·과·소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②(생략)	제2조(국장 및 실·과·소장·담당관) ①----- 실·과장 및 담당관 ----- 실·과·소 및 담당관 ----- ②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
제3조(실·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민봉사실,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, 자치행정국, 산업복지국, 건설도시국을 둔다	제3조(실·담당관·국) ----- 기획감사담당관, 문화공보담당관 -----																		
제5조(기획감사실) <u>기획감사실장</u> -----	제5조(기획감사담당관) <u>기획감사담당관</u> -----																		
1.~12 (생략)	1.~12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
제6조(문화공보실) <u>문화공보실장</u> -----	제6조(문화공보담당관) <u>문화공보담당관</u> -----																		
1.~4 (생략)	1.~4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
5. <u>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보조 협조</u>	<삭제>																		
6. <u>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</u>	5. 현행 제6호와 같음																		
7. <u>시민회관운영에 관한 사무</u>	<삭제>																		
8. <u>기타 문화공보에 관한 사항</u>	6. 현행 제8호와 같음																		
제7조(자치행정국에 두는 과) ① ----- 회계과 -----	제7조(자치행정국에 두는 과) ① ----- 회계과, 주민지원과 -----																	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
1.~18 (생략)	1.~ 18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
<신설>	19. <u>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보조</u>																		
제18조(소관사무) (생략)	제18조(소관사무)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
1.~2 (생략)	1.~2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
<신설>	3. <u>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</u> 가. <u>종합운동장 운영에 관한 사무</u> 나. <u>시민회관운영에 관한 사무</u> 다. <u>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</u> 라. <u>기타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</u>																		
[별표 3]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6조관련)	[별표 3]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6조관련)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사업소명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산림공원사업소</td> <td>이천시 중리동 187</td> </tr> <tr> <td><신설></td> <td>설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사업소명	위 치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산림공원사업소	이천시 중리동 187	<신설>	설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사업소명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산림공원사업소</td> <td>이천시 관고동 356</td> </tr> <tr> <td>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</td> <td>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 11-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사업소명	위 치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산림공원사업소	이천시 관고동 356	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	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 11-1
사업소명	위 치																		
(생략)	(생략)																		
(생략)	(생략)																		
산림공원사업소	이천시 중리동 187																		
<신설>	설>																		
사업소명	위 치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
산림공원사업소	이천시 관고동 356																		
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	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 11-1																		